

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44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6. 1. 23.

발 의 자: 장 길 천 의원

1. 제정이유

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과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증진,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
다. 정원문화 발굴·진흥 사업 및 정원문화 확산 장려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안 제5조)

라.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과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 ~ 안 제7조)

마. 정원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6. 1. 28. ~ 2026. 2. 1.

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원”이란 식물, 토석, 시설물(“조형물”을 포함한다) 등을 전시·배치하거나 재배·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.
2. “정원문화”란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.
3. “마을정원사”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·관리 및 보전·전시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.
4. “정원박람회”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광진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광진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

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정원문화의 발굴·진흥 등)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·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·수집·보급 및 관리
2.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
3.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
4.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, 행사,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
5. 소식지,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
6.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
7. 정원 캠페인 추진
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정원문화 확산 장려 등)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광진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.

1. 구민이 주도하는 단체 정원 조성
2. 구민 대상 정원 문화에 대한 교육
3.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
4.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·법인·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)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

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,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,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)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교육과정을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정원박람회의 개최)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제6조(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) 제3항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) 제3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광진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을 위한 사업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[공원녹지과]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사업비	55,000	0	0	0	0	55,000
	소계	55,000	0	0	0	0	55,000
□ 총 비용		55,000	0	0	0	0	55,000

※ 1차년도 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

4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- 광진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을 위한 용역비, 자재구입비 등

5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국,시,구비 등	55,000	0	0	0	0	55,000
합 계		55,000	0	0	0	0	55,000

6. 작성자: 교통건설국 공원녹지과 조경관리팀 박진수(02-450-7785)

법규명 **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**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목원”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·증식·보존·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·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.

가.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

나.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

다. 화목원·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

라.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시설

1의2. “정원”이란 식물, 토석, 시설물(조형물을 포함한다) 등을 전시·배치하거나 재배·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(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유산,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자연공원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.

2. “수목유전자원”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(자생·재배 식물을 포함한다)과 그 식물의 종자·조직·세포·화분(花粉)·포자(孢子)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·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.

3. “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”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·관리 및 보존·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

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.

4. “희귀식물”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·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.

5. “특산식물”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.

6. “정원산업”이란 정원용 식물,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·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
7. “정원치유”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·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.

제18조의6(정원의 운영·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·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=

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·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·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

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·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의14(박람회 등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의18(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)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

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.